

한여울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 2021.03.01.
개정 : 2022.04.13.
개정 : 2022.10.12.
개정 : 2022.12.14.
개정 : 2023.04.05.
[개정](#) : 2023.12.20.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한여울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 3조 (명칭) 본교는 한여울초등학교라 한다.

제 4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시흥시 능곡군자로 2(군자동)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휴업일

제 5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기진급으로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졸업을 할 수 있다.

제 6조 (학년)

-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관할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 7조 (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8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4일
 3. 여름 방학
 4. 겨울 방학

5. 학년말 방학
 6. 학교장 재량휴업일(단기방학)
 7.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 ② 제 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 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비상재해,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휴업일이라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 9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편성은 당해연도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제10조 (학생정원)

- ① 학생 정원은 당해연도 학생수용 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의무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 및 졸업

제11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2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 4. 학교장 허가교외체험학습 및 교환·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7.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③ 지각은 1교시 시작 후 등교하는 것을 말하고, 조퇴는 청소활동을 제외한 교과 및 특별활동 시간 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 ④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에 통보하며 2일 미만은 결석계를 3일 이상의 병결은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한다.
- ⑤ 무단으로 장기 결석 학생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밟아 학생을 관리한다.
 - 1. 3~6일간 학부모의 통보 없이 무단 결석할 경우 거주지의 통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 동태를 파악, 확인한다.
 - 2. 1항으로 파악한 결과가 전출인 경우 전출지 학교에서의 전입학서류 송부요청서가 7~8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동사무소에 전출입에 관한 사실 확인 협조 공문 발송, 회신으로 확인한다.
 - 3. 회신 결과 행방불명 또는 취학 독려 상황이 불가능하며 3개월 이상 장결이 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관련 정원 외로 관리한다.
- ⑥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학교장의 명령으로 등교를 중지하여 다른 학생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한다.
 - 1. 법정전염병은 제1종, 2종, 3종을 모두 포함한다.
 - 2.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일정한 시기, 계절별로 유행하는 독성이 강한 인플루엔자, 유행성결막염(아폴로눈병), 풍진, 수두 등으로 교육기관이라 보건 관련 기관의 통보를 참고로 한다.
- ⑦ 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결 상황 관리에 대하여는 ‘병결’ 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출석 인정 기간 및 횟수 : 월 1일
(지각, 조퇴, 결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
 - 2. 증빙서류는 보호자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 보건교사의 확인서 등으로 한다.
- ⑧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5 3
입양	본인	20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⑩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등 그 외의 출결 처리는 한여울초등학교 체험학습·결석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14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 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생평가)

- ① 학교장은 평가를 실시하되 교과와 체험활동의 학년별 성취기준에 따라, 성취 수준을 정하고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을 활용한 과정중심의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다음 학습에 환류하여 학력을 증진시키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며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돋도록 한다.
-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한여울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③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졸업생 성적관리는 졸업생 시상 기준에 의한다.

제16조 (과정수료의 인정)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전학·휴학·취학유예

제18조 (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 통지를 받은 아동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제19조 (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20조 (취학유예 및 휴학)

- 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의 취학예정자로 통보 받은 아동이 취학하지 아니할 경우 동장에게 통보하고 시흥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가정방문 및 보호자 면담 요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면담에 불응하거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결석 학생 및 보호자에게 유선연락과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출석을 독려하고, 소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또는 2회 이상 출석 독려를 하였으나 결석상태가 계속되는 학생의 경우 장기결석 학생 현황, 가정방문, 내교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을 시흥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입학)

-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⑦ 탈북자 또는 불법 체류자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를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은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

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재입학·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 ① 우리 학교의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를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의 결정에 관한 심의
 2. 미취학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구성은 교장을 위원장으로, 교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으로 교무부장, 인성부장 2인을 두며, 외부위원으로는 지역관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1인, 학부모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⑤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⑥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결과를 동장과 시흥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6조 (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

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 할 수 있다.

제27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26조 ②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장 선정

제28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 ①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 ⑦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9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 ① 제28조 ②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 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0조 (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해당 학년부장, 평가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⑥ 위원이 제④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⑦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31조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8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32조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방과후교육활동비, 돌봄교실 급·간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3조 (학교생활인권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 (학생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외의 교외상은 학생의 전인교육을 위하여 학교장 추천을 하지 아니하며 포상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③ 포상위원회는 학교장이 정하는 대외상 및 교내상의 시행을 위해 구성되며 교감이 위원장, 교무부장 및 해당 학년 담임교사를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포상담당자가 맡는다.

제35조 (훈육·훈계방법)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6조 (학생 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 기간에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1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수정) 징계의 사유, 절차, 방법 등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여울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 ⑥ (신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37조 (징계 외의 지도 방법) (신설)

징계 외의 학생 지도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지도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하되,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한여울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38조 (학생의 학교생활) (수정)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한여울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39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기타 그 밖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은 한여울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40조 (학업중단 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10장 학생자치 · 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

제41조 (학생자치활동)

- ① 우리 학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여울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42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수업·연구 등 우리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학부모회 조직 · 운영)

-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여울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 ③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둔다.
- ④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 등을 둔다.
- ⑤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44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여울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 (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
- ②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 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 기타 교원 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③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학교의 장이 교원, 학부모, 변호사, 국가경찰공무원,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③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처리(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등)를 위하여 업무담당자의

간사 역할 병행할 수 있다. 단, 간사 또는 업무담당자는 위원 병행이 불가하다.

제47조(교권침해 예방교육)

-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8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개정 절차)

-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② 학교규칙 제정·개정절차에 따른다.
- ③ 법령에 따른 학교규칙 제정·개정이므로 의견수렴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확정한다.

제12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49조 (학칙개정 절차)

- ① 공(사)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 (시행규칙)

-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학칙은 2022년 4월 13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2년 10월 12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2년 12월 14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3년 4월 5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3년 12월 20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